

제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636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이정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현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 론 종 결 2023. 5. 22.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5. 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8,044,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44,6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연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C은 그 투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C은 2019. 10. 25. 원고에게 591,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의 아버지 D는 2019. 5. 8. 사망하였다. D의 배우자인 피고가 3/9를, 자녀들인 C, E, F가 각 2/9를 상속하였다. D가 남긴 재산은 다음과 같다.

- 제주시 G 과수원 4937㎡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다. C과 피고를 비롯한 D의 상속인들은 2020. 5.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민법 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여부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주시 G 과수원 4,937㎡ : 1,925,43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 451,226,470원

- 합계 2,376,656,47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합계 1,093,036,470원(= 451,226,470원 + 1,925,430,000원 × 3/9)을 상속받은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인 33%를 넘어 전체 상속재산 중 46%(= 1,093,036,470원 ÷ 2,376,656,470원) 가량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받게 된 46%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1958. 4. 30.경부터 초등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62. 8. 18. D와 혼인한 후 1996. 2. 29.경까지 약 37년 10개월 동안 초등교사로 근무하면서 D와 함께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

② D는 1978. 3. 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1993. 8. 28.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취득하였고, 1985. 1. 30. 제주시 G 과수원 4937㎡를 취득하였다. D가 취득한 위 재산은 모두 피고와 혼인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그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D는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혼자서 D를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재남